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9.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임실군 계획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조정(안 별표 16)

1) 발전시설

- 입지 기준에 대하여 “도로 150미터 ⇒ 100미터, 주거밀집지역 300미터 ⇒ 200미터, 관광지, 공공청사, 학교, 병원, 연수시설, 문화재, 전통사찰 100미터 ⇒ 50미터”으로 완화 조정
- 5년 이상 거주 군민에 한해서 발전시설 입지기준을 도로 90%, 주거밀집지역 50% 이내로 완화 조정
- 기존건축물 상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경과 3년 경과 내용에 대하여 모든건축물 ⇒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에 한정하여 적용

3. 참 고 자 료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집행부 의견조회

라. 입법예고 : 2023. 11. 9. ~ 11 .15. (6일간)

마. 기 타

1) 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별표)

3) 수정 별표

4) 관련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가목 중 “150미터”를 “100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300미터”를 “200미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100미터”를 각각 “50미터”로 하며, 같은 호 차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목 각 세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군수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한 3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16 제2호차목(1) 및 (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타목 중 “가목부터”를 “가목은 90%, 나목부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 접수를 받은 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6]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5조의2제1항 관련) 2. 제1호가목(1)의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 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 계까지 최단거리 <u>150미터</u> 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 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u>300미터</u>. 다만,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 한 조례」에 따른 해당 행 정리 주민들이 동의(실거 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 대주)의 동의(100% 찬성) 를 얻은 경우)하는 경우에 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 가할 수 있다. 다. (생략)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임실군 관광진흥	[별표16]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5조의2제1항 관련) 2. ----- ----- ----- -----. 가. ----- ----- <u>100미터</u> 나. ----- ----- ----- <u>-200미터.</u> ----- ----- ----- ----- ----- 다. (현행과 같음) 라. ----- -----

에 관련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마. 공공시설부지(공공청사, 학교, 병원, 연수시설), 문화재(임실군 지정 문화재 이상), 전통사찰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바. · 사. · 아 · 자.(생략)

차.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0미터

마. -----

50미터

바. · 사. · 아 · 자. (현행과 같음)

차. -----
----- 설치하는

--.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
부터 3년(경지정리구간에서
는 5년)이 경과할 것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후
3년간(경지정리구간 5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
다.

카. (생략)

타. 군민(개발행위허가 또는
협의신청일까지 임실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
록을 두고 실거주 한 자에
한한다)이 본인 소유의 토
지에 발전용량 200kw 이
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허가할 수 있으며, 군수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
를 주목적으로한 3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
매 관련서류)등을 제출받
아 확인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카. (현행과 같음)

타. -----

-- 가목은 90%, 나목부터

기준을 50% 이내로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과.·하. (생 략) 3. (생 략)	----- -----. 과.·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

임실군 계획 조례

[별표 16] <신설 2018.8.31.> <개정 2019.2.28.> <개정 2020.07.01.> <중전의
별표 15에서 이동 2022.9.15>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5조의2제1항 관련)

2. 제1호가목(1)의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200미터. 다만,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리 주민
들이 동의(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대주)의 동의(100% 찬성)를 얻은
경우)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주거밀집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1호의 가구 기본 100미터에 1호의 가
구가 늘어날 때마다 50미터를 더한 거리로 한다. 다만, 해당 주민들이 동
의(실거주 중인 가구의 대표자(세대주)의 동의(100% 찬성)를 얻은 경우)하
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임실군 관광진흥에 관련한 조례에 따른
주요 관광지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50미터

마. 공공시설부지(공공청사, 학교, 병원, 연수시설), 문화재(임실군 지정 문화재

이상), 전통사찰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50미터

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사.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목 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아. 경계울타리는 사업부지 경계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 자연적인 지형·지물에 의해 해당 도로로부터 조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차.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군수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한 3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카. 기존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2) 높이: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 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2.5미터 이내일 것

(3) 안전: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국가기술훈자력법」 상 건축구조 기술사가 작성한 「건축법」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타. 군민(개발행위허가 또는 협의신청일까지 임실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한 자에 한한다)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목은 90%,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50% 이내로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파. 마을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소득창출을 위하여 200kw 이하의 마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마을회 등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하. 준공된 발전사업부지 내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없이 발전시설을 재시공할 경우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지면적이 증가할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호가목 (2)부터 (6)까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50미터

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300미터(주거밀집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최단거리 100미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양주영 의원